

<h1 style="margin: 0;">촬영 허가서</h1>						
①신청인	(상호)		②촬영명			
③연락처			④촬영내용			
허가내용	⑤ 신청기관	⑥ 대상장소	⑦ 촬영일자	⑧ 촬영시간	⑨ 촬영인원	
				~	명(모델 명포함)	
				~	명(모델 명포함)	
	⑩ 촬영장비	카메라장비				
		조명장비				
음향장비						
기타소품						
⑬허가조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,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. 살인, 방화,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. 별표2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.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소와 협의하고,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.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.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·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소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. 신청자(사업자)는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. 반입 불가 품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(담배, 라이터,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) 나.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. 인공비, 인공눈,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.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·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. 건물내부, 박석, 월대에는 발전차,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.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.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.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.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.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적관리소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					
⑭기 타						
<p>「유적관리소 보존·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해당 유적관리소장) (인)</p>						